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년월일 : 1996. 11. 2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같은법 제64조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사하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가. 매년 전3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천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등으로 사하구재해대책기금을 조성 (안 제2조)
- 나.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제10조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로 예탁관리하며 기금은 재해사전대비사업,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 재해예방 또는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타용도로 사용금지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건설행정계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같은법 제64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나. 예산조치

- 매년 전3년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천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97 적립금 : 113,000천원)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제10조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예탁관리하는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사하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건설행정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